

광주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가단5176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정경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생, 정가람

변 론 종 결 2022. 11. 22.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차271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27.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주)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491,772원 및 이중 123,064,406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지급명령부분 송달일까지 연 9.2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되, 단 소외 C는 근보증한도액 금 93,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득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C에게 2019. 7. 20. 송달되고, 2019. 8. 3.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망 F(C의 아버지)이 2019. 12. 2.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 B(3/11), C(2/11), 망 G(2/11)(대습상속인 자 H, I), J(2/11), K(2/11)들이 상속지분별로 공동상속되어야 함에도 C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고, 2020. 5.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 93,5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가. 피고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2020. 5. 26.경 무렵에는 C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고(원고는 특히 2019. 5. 17. C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2년이 도과한 2022. 5. 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9. 5. 17. C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2020. 5. 26.경 무렵 C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초과 상태인 C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2019. 12.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C의 2/11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선의'였음을 주장한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피고와 C는 모자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악의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소연

[별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 705㎡
2.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 412㎡
3. 광주광역시 광산구 ,
 벽돌 및 슬래브조(철근)콘크리트 지붕
 단독주택
 1층 단독주택 148.94㎡
 부속건물
 퇴비사, 창고, 변소, 대문 72.5㎡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 129㎡
5.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로 79㎡. 끝.

